

Chai 서비스 이용약관서

주식회사 야놀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지구전자결제(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을이 발행·관리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이하 “**본건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 또는 갑의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여행·레저 상품 예약중개 또는 예약대행 관련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 결제를 위하여 을이 본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본건 서비스 : 갑 또는 갑의 계열회사(이하 “**갑**”이라고만 한다)가 관리,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고객이 구매한 상품등에 대한 대금 결제를 위하여 을이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전자지급서비스 및 그에 부수한 업무로서 을이 제공하도록 양 당사자간 합의된 업무
2. 고객 : 을이 제공하는 본건 서비스의 이용에 동의한 자로서, 갑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을의 본건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등의 대금을 결제하는 자
3. 상품등 : 실물상품과 디지털상품,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 및 용역을 총칭
4. 선불전자지급수단 :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상품등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을이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발행한 결제수단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
5. 비정상거래 : 을이 제공하는 결제수단의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결제의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자금 결제의 통상적 법률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
6. 상품 민원 : 갑의 플랫폼을 통하여 상품등의 거래를 한 고객 또는 수령인이 상품의 하자, 거래 취소, 철회, 환불, 배송 사고 등 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갑 또는 을에게 제기하는 신청 및 청구로, 비정상거래 민원과 구분함

제 3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단, 본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어느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본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간 자동으로 계속하여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19-C-03015-NM

PLAINTIFF'S
EXHIBIT

138a

23-cv-1346 (JSR)

제 4 조 갑의 책임과 의무

1. 갑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플랫폼 및 사이트 하단에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사업장 주소, 고객센터번호, 이메일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2. 갑은 본건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 관련 자료를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 대해 을의 정당한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7] 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은 플랫폼을 운영함에 있어 국내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당국의 인·허가 또는 신고 등 제반 절차를 구비하는 등 법령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고객의 취소·환불 요청이 있을 경우 갑은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 또는 플랫폼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취소·환불규정에 근거하여 정당한 취소·환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취소·환불 사유 발생시 그 결과를 을에게 통보하여 을이 본건 서비스의 제공 및 정산 업무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갑은 을이 제공한 본건 서비스를 임의로 변경, 수정할 수 없다. 임의로 변경, 수정함으로써 을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갑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갑은 본 계약에서 정의한 플랫폼 그리고 별도로 합의된 플랫폼 내에서만 을이 제공하는 본건 서비스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관련하여 기술·보안상 개선이나 업데이트, 신규 서비스 런칭, 서비스 확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갑은 을에게 본건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범위의 확장을 요청할 수 있고 을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런 방안이 생기면, 갑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청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계약서 또는 부속합의서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
7. 갑은 고객이 갑이 제공하는 상품등을 구매함에 있어 을이 발급·관리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 갑과 을이 정하는 방법(고객이 설정한 비밀번호 입력 및 승인방법 등)으로 을로부터 거래 승인을 받은 후 결제처리를 하여야 한다.
8. 갑은 본건 서비스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수수료를 서비스명 회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등 현금거래 및 기타 타 결제수단 이용고객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9. 갑은 본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a)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본건 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 (b)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본건 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c) 을의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본건 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d) 갑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 (e) 본건 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10. 갑은 을이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라 자료제출 등의 의무가 있는 경우 을의 요청에 따라 제9항의 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단, 과도한 자료요청이나 자료 준비에 과도한 리소스가 투입되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의 관련 법령상 의무의 이행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수 있다.

제 5 조 을의 책임과 의무

1. 을은 갑이 본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갑의 플랫폼 운영시스템과 을의 전자지급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한다.
2. 을은 을의 결제수단을 활용하려는 고객의 Chai 서비스 가입신청을 받음에 있어 해당 고객이 등록하는 휴대폰 번호가 해당 고객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고객 본인 결제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3. 을은 본건 서비스를 연중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스템의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일시적인 중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7]영업일 이전에 갑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4. 을은 고객이 갑의 플랫폼 내 상품등의 구매를 위해 입력한 결제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갑이 제4조 제4항에 따라 을에게 고객에 대한 환불 절차 진행을 요청한 경우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고객에 대한 환불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객에 대한 환불 방법은 고객이 본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동의한 본건 서비스의 환불 방법에 의하기로 하며, 달리 특별히 정하지 않는 이상 고객 계좌로의 현금환불을 원칙으로 한다.
6. 위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결제에 사용된 전자지급수단의 원상회복 방법으로 환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갑이 을에게 특정 거래에 한하여 위와 같은 환불절차의 진행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해당 고객이 결제에 사용한 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원상회복하는 방법으로 해당 고객에 대한 환불 업무를 처리한다.

제 6 조 거래정보의 제공

1. 갑과 을은 결제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기관 등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계약상대방의 거래정보와 고객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이를 해당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단, 갑과 을은 해당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전항과 별도로, 갑과 을은 본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계약상대방의 정보를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계약상대방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3. 갑과 을은 비정상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계약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조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1.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내용(부속합의서인 프로모션 지원합의서를 포함한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계약상대방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약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시 귀책사유자가 정보누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양 당사자는 본 계약 종료 직후 영업비밀 등을 폐기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3.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각자 독자적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안정적인 플랫폼의 운영 및 고객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수준의 보안 및 인증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항을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 있는 당사자가 그 비용과 책임으로 상대방을 면책하고 제3자에게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제 8 조 결제대금의 정산

1. 결제대금의 정산.

을은 본건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의 지불대금에 제9조의 수수료 및부가세 등 제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하 "**정산대금**"라 한다)을 갑에게 지급한다.

2. 정산일: D(결제일)+ 14일(정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예시) 2019년 6월 10일 결제분은 2019년 6월 24일 지급, 2019년 6월 11일 결제분은 2019년 6월 25일 지급.

3. 정산대금의 지급.

- (a) 을은 결제대금, 결제수수료, 정산대금 등 본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정산내역을 상점관리자 등 별도 협의된 방법으로 갑에게 고지하기로 한다.
- (b) 을은 정산일에 갑이 지정한 계좌인 다음의 계좌로 정산대금을 지급한다.

플랫폼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아놀자	우리	한국정보통신(주)	[REDACTED]
아놀자(레저)	우리	한국정보통신(주)	
아놀자(호텔)	우리	한국정보통신(주)	
아놀자(펜션)	우리	한국정보통신(주)	
주식회사레저큐	우리	한국정보통신(주)	

- (c) 영업일 기준 등은 금융권 업무에 준하여 시행한다.
- (d) 정산대금 지급 전 상품등에 관한 거래의 취소 등 환불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불의 처리는 제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을이 처리하고, 정산대금 지급 후 상품등에 관한 거래의 취소 등 환불 사유의 발생, 상품 민원, 비정상거래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을이 갑에게 지급한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으로부터 을이 돌려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을은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갑과 합의하여 지급할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을은 차감내역과 사유를 사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갑과 을 상호간 차감내역과 사유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 (e) 갑과 을은 본건 서비스 거래 중에 정산금액의 과오납이 확인될 때 즉시 내역을 상호통지하고 [2]영업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다음 정산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f) 결제대금 정산방식에 관한 조건은 갑과 을이 상호 서면으로 합의하여 변경 가능하다.
- (g) 갑이 본건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결제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사전 통지하기로 한다.
- (h) 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갑에 대한 결제대금의 지급 및 정산이 지연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 9 조 수수료의 지급

1. 수수료.

갑은 을이 제공하는 본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수수료율.

- (a)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 만료까지 결제금액의 1.3%(이하 “기준 수수료율”이라 한다)
- (b) 단, Terraform Labs Pte. Ltd.가 테라 서비스와 오픈뱅킹 API를 연동하는 날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본건 서비스가 갑의 플랫폼에 연동된 날로부터 6개월이 도래하는 날 중 빠른 날부터 기준 수수료율은 1%로 변경됨

3. 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 (a) 수수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갑에게 월 1회(해당월 마지막 정산 마감 후 영업일 기준 익월 3일 이내) 발급 및 배부한다.
- (b)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은 결제일자 기준으로 발행한다.

제 10 조 비정상거래 등 고객민원의 처리

- 1. 갑은 갑의 플랫폼을 통하여 본건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고객이 상품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갑의 책임 하에 제반 문제를 성실히 해결하여야 하며 을은 문제해결에 최대한 협조한다. 단, 비정상거래 민원 및 본건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민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을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갑은 문제해결에 최대한 협조한다.
- 2. 고객의 이의신청 및 민원 발생시 갑과 을은 상호 확보한 거래내역 관련 정보를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제출 요구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계약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제공, 통지하여야 한다.

3. 민원의 처리 결과 특정 거래에 대한 환불이 필요한 경우,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갑은 환불 등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을에게 제공하고 관련 대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4. 갑 또는 을이 제1항에 따른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지 않아 갑의 플랫폼 또는 을의 본건 서비스 운영·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계약상대방에게 손실이 발생될 경우에는 귀책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단 양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차기 정산대금에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다.
5.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비정상거래 발생 시 을은 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급을 사전 통지 후 보류할 수 있다. 단, 해당 거래가 비정상거래라는 점과 그 비정상거래가 갑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산을 보류한 을에게 있다.

제 11 조 거래한도의 제한

을은 갑의 신용도, 매출유형, 고객의 이의신청 및 민원발생 빈도, 민원해결을 위한 협조성 등 을의 리스크관리, 운영방침에 따라 갑과 사전 협의하여 일, 월, 년별로 승인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 12 조 계약상 지위의 승계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양도 등 계약당사자가 변동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발생 [30]일 전에 발생사유와 그 내용 및 그로 인해 권리를 승계할 제3자 사이에 발생한 법률관계 등을 명확히 하여 이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다.

제 13 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당사자들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a) 갑이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제3항 제3호 내지 제5호를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 (b) 갑이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제3호 내지 제5호를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 (c) 을이 본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제반 의무를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그 위반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 (d) 당사자 일방에게 회생절차 신청, 부도,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e)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f)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한 경우
- (g) 갑 또는 을이 각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더 이상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h) 기타 불성실한 업무수행 및 일방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쌍방간에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손상된 경우
- (i) 당사자 또는 Terraform labs PTE.LTD과 체결한 별도의 협약에 따른 할인을 또는 프로모션 지원을 갑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제 14 조 손해배상

1. 본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귀책 당사자가 전액 배상책임을 진다. 또한 채권보전이나 회수에 필요한 재판상, 재판외 비용에 대해서도 귀책당사자가 부담한다.
2. 갑은 을이 제공한 본건 서비스를 임의로 변경, 수정할 수 없고, 고의 또는 과실로 변경, 수정한 경우 발생한 손실에 대해 갑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5 조 부속합의서의 체결

당사자들은 갑의 플랫폼 내 본건 서비스이용의 활성화 및 본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고객 증대를 위한 프로모션 진행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합의서 또는 이메일 등의 서면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다.

제 16 조 계약의 효력발생 및 통지의무

1. 본 계약은 갑과 을이 계약서에 기명 날인을 완료한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갑은 본 계약 체결과 함께 플랫폼의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결제대금 수령 금융기관 계좌정보 등 을이 본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을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 당시의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사업자 정보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생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통지 또는 미통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책임지지 않는다.
4. 갑은 본건 서비스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중지 예정일 [30]일 이전에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비정상거래, 미해결 민원, 카드사의 차감 지급보류건에

대하여 을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7 조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당사자들은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제 18 조 기타

1. 준거법.

본 계약 그리고 이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규율, 해석 및 집행된다.

2. 관할 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선의에 기초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로 하는 재판에 의해 최종 해결한다.

3. 완전계약.

본 계약(별첨, 별지 및 부속합의서 포함) 및 본 계약에 따라 체결된 계약, 서류와 증서들은 본건 계약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최종적, 완전한 그리고 배타적인 합의를 구성하며, 그에 대한 종전의 모든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 양해 및 진술을 대체한다.

4. 포기.

본 계약에 따라 일방 당사자에게 요구되는 의무 이행은 상대방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 포기서에 의해서만 포기가 가능하고, 그러한 포기는 그에 기재된 특정 의무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어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의한 본 계약의 규정 위반을 포기하더라도, 이는 본 계약의 동일한 규정의 추후 위반 또는 다른 규정의 위반에 대한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8]월 [23]일

(갑)	회사명 :	주식회사 야놀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8길 42
	대표자 :	이수진 (인)
	연락처 :	1644-1346
(을)	회사명 :	주식회사 지구전자결제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정수이로 20길 16, 제이케이타워 3층
	대표자 :	한창준 (인)
	연락처 :	070-4323-3689